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증가 추세에 있는 해난사고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대상 사업의 확대

-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추가(안제6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나. 예산조치: 관련 부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153호

가) 예고기간: 2019. 8. 29. ~ 21019. 9. 1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순찰과 현장지도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업은 제4조의 지원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보조대상 사업)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순찰과 현장지도 사업</u></p>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단체 참여 권장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보조금은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행정과장 이 을 상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